

정 관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법인의 명칭은 “사단법인 점프(JUMP)” 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라고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법인은 대학생 등의 지식환원 및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증진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,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구성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경쟁력 있는 대학생 인재 육성을 위한 멘토링 및 지식환원 지원
2.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및 학습지도
3.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
4. 대학생 및 전문인력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
5. 사회적 경제 및 비영리 섹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
6. 모금 및 홍보
7. 기타 위 제2조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8. 위 각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
9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수익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4조(법인의 이익) 법인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이사나 출연자 등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.

제5조(사무소와 분사무소)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, 필요한 경우에 국·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 2 장 사 원

제6조(사원의 자격)

- ① 사원은 설립 목적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치고,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
- ② 제1항에서 '개인'이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을 말하며, '단체'란 법인, 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.
- ③ 사원의 자격,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7조(사원의 권리)

- ① 사원은 임원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사원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,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- ③ 사원은 법인에서 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.

제8조(의무) ①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
1. 정관 및 각종 규정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 의 결의사항 이행
3. 회비 및 각종 부담금의 납부

제9조(탈퇴) 사원이 법인을 탈퇴하려는 때는 법인의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제10조(사원자격의 상실) ①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1.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을 때
2.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된 때
3. 1년 이상 사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된 때

제 3 장 임 원

제11조(임원의 구분과 정수) ①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: 1명
2. 부이사장 : 2명 이내
2. 상임이사 : 2명 이내
3. 이사 : 이사장과 부이사장,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
4. 감사 : 1명

제12조(임원의 선임)

① 이사장과 이사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 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.

② 부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임원의 임기)

①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차기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한다.

③ 이사장이 공석이 된 때에는 부이사장이 임시총회 전까지 권한을 대행한다. 다만, 임기가 6개월 미만시는 차기총회까지로 한다.

제14조 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2. 임원간에 분쟁이 있거나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
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5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5.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 6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7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 8. 법원의 판결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 9.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
-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차지해서는 아니 된다.
-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, 재무 및 회계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한다.

제16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나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부이사장은 이사장 유고시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④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.
-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1.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감사
 2. 총회 및 이사회, 사무국의 운영과 그 임무에 관한 사항 감사
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
 4. 제3호의 시정요구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5. 그 밖에 법인의 재산현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, 이사회 및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

제17조 (임원의 보수) ①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대외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실비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상임이사 공석시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상임이사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.

제 4 장 총회

제18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사원으로 구성한다.

제19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7일전 까지 각 사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20조(총회의 의결사항)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
6. 사원의 제명
7. 그 밖의 중요사항

제21조 (총회소집의 특례)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6조제3항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재적사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총회 소집권자가 없거나 이사장이 회의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사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.

④ 본 법인은 총회를 아래 요건을 갖춘 화상회의시스템에 의해 개최하거나 오프라인 총회와 병행할 수 있다.

1. 화상회의 참석회원 모두가 서로의 안면을 인식할 수 있을 것.
2. 화상회의 참석자들이 문서공유가 가능할 것.
3. 공신력 있는 관공서 등이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일 것.

⑤ 이사장은 총회를 화상회의로 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총회소집통지서에 화상회의 여부와 참석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, 화상회의로 총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사원은 총회 개시 3일 전까지 그 뜻과 기술적으로 접속 가능 한지 여부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알려야한다.

제22조(개회 및 의결정족수) 법인의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23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 ① 사원은 사원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②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4조(서면결의) 총회에 부의할 사항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및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의결할 수 있다. 다만 제20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.

제25조(의결권의 제한) 임원 또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권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사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26조(회의록) ① 총회 및 이사회 의사에 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출석한 이사 전원이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주된 사무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이사회

제27조(이사회 구성)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28조(이사회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의

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③ 이사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목적과 안건, 시간, 장소를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제29조(개회 및 의결정족수) ① 법인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② 이사회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30조(이사회회의 기능)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
3.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4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5. 회원가입 승인
6. 제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7. 사업상 필요한 부설기관의 설치 및 폐지
8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9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10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11. 그 밖에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31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 ①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②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1명으로 제한한다.

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2조(의결권의 제한)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1.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33조(서면결의)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긴

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로도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상 과반수가 이사회에서 거부결의를 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34조(회의록)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·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출석한 이사 전원이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
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이 법인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35조 (통신수단에 의한 회의)

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② 전항의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을 때에는 의사록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.

③ 운용가능한 통신수단은 본 정관 21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.

제 6 장 사무국

제36조(사무국) ①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, 종사자의 임면 및 보수,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 7 장 기금위원회

제37조(기금위원회) ① 법인은 회원이 출연 및 모금활동을 통해 조성한 목적사업 기금의 설립과 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기금위원회는 기금 기부자 및 수혜자 대표, 기금 운영 관련 전문가, 법인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한다.

- ③ 기금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,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한다.
- ④ 이사회는 기금위원회의 심의, 의결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8 장 자문위원회

제38조(자문위원회) ① 법인은 사업과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자문위원회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해당 분야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(사회적기업, 기부자, 소비자, 기업, 정부 및 공공기관 등) 대표로 구성한다.
- ③ 자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한다.
- ④ 이사회는 자문위원회의 심의, 의결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9 장 재산과 회계

제39조(재원)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- 1. 회비
 - 2. 사업 수익금
 - 3. 각종 기부금
 - 4. 그 밖의 수익금
- ② (회비 및 기부금 공개)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제40조(재산구분)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- 1.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
- 2. 부동산
- 3.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
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회비, 기부금, 후원금 등의 수익금 등으로 한다.

제41조(재산의 관리) ① 법인은 재산의 증감 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

②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담보,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려는 때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

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.

④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⑤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를 부담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2조(잉여금의 처리)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다.

제43조(회계연도)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
제44조(회계감사) 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45조(사업계획 및 예산 등의 보고) ① 법인의 매년도 사업계획과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편성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법인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작성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법인의 매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6조(사업실적 및 결산) 법인의 사업실적 및 예산의 집행실적은 이사장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10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등

제47조(정관변경)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려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8조(법인의 해산) ① 법인은 「민법」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라 해산한다.

② 법인이 해산하려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49조(잔여재산의 처분) ①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.

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.

제50조(준용규정)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민법」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과 「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·감독 운영지침」을 준용한다.

제51조(규칙제정) 법인의 운영 및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2조(공고의 방법) ① 법인이 법령과 정관, 그 밖에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이 법인의 기관지에 실는다.

② 제1항의 공고내용을 사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다.

③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) 이 법인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설립당시의 기본재산) 법인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현황, 임원현황, 법인이 사용할 인장현황은 별표1, 별표2, 별표3과 같다.

2017 년 3월 20일
사단법인 점프
대표 이의현 (인)